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0. 7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  
<http://www.dalseo.daegu.kr>  
[문화체육관광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문화체육관광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2013. 3. 4. 제정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최근 제정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」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에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별표4에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의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0. 6. 1일부터 6.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0. 6. 30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0082048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7. 3.  
제 출 자: 달서구청장  
(문화체육관광과장)

### 1. 제안이유

- 2013. 3. 4. 제정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최근 제정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」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에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사용료 감면대상에 달서구 내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 조항 추가 (안 별표4)

#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### 5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 법령

- 1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- 2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
- 3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####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# 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: 2020. 6. 1.~6. 22.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 심사: 해당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생략(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)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4]

## 사용료 등의 감면(제9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<b>[별표3] 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</b>		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	전액면제	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	50%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50%	
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50%	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50%	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50%	
<b>[별표3] 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</b>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	50%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	50%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따른 의사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	50%	
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	50%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50%	
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	30%	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4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사용료 등의 감면(제9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감 면 율 (할 인 율)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top: 10px;">[별표3] 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</td> </tr> <tr> <td>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</td> <td></td> <td>전액 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top: 10px;">[별표3] 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따른 의사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top: 10px;">[별표4] 사용료 등의 감면(제9조 관련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top: 10px;">[별표3] 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</td> </tr> <tr> <td>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</td> <td></td> <td>전액 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top: 10px;">[별표3] 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따른 의사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td> <td>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중 병역명문기증 소지자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감 면 율 (할 인 율)	비 고	[별표3] 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			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		전액 면제	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	50%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50%		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50%	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50%		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50%		[별표3] 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	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	50%	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	50%	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따른 의사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	50%		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	50%	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50%		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	30%		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30%		[별표4] 사용료 등의 감면(제9조 관련)			[별표3] 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			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		전액 면제	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	50%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50%		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50%	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50%		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50%		[별표3] 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	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	50%	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	50%	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따른 의사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	50%		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	50%	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50%		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	30%		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30%		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	30%		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중 병역명문기증 소지자	30%		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	30%	
구 분	감 면 율 (할 인 율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3] 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		전액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3] 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따른 의사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4] 사용료 등의 감면(제9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3] 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		전액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3] 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따른 의사상자·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중 병역명문기증 소지자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【 관 계 법 령 】

#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9조(예우)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
2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수강료, 주차료 일부 감면
3.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4.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
#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

제5조(우대)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 한다)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,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, 입장료,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·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2. 달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3.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